

 보 도 자 료 			
보도일시	2022. 1. 3.(월) 조간 *인터넷 2022. 1. 2.(일) 12:00 이후 / 총 3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	과 장 주평식 사무관 김미옥	044-202-7454 044-202-7469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2022년부터 「고령자 고용지원금」 제도 시행

-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-

-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'22.1.1.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「고령자 고용지원금」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「고령자 고용지원금」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'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,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.
-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.

□ 「고령자 고용지원금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(지원대상)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*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

*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

- ② (지원수준)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
- ③ (지원한도)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%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(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)

* 기타 등 세부 사항은 <붙임> 「고령자 고용지원금」 사업개요 참조

- 「고령자 고용지원금」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'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'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(기업지원팀)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,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.
-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“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 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”이라고 강조하면서
 -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현재 일 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빠른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,
 -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「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」 활성화 방안 마련,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「재취업지원 서비스」 기준 개선, 중장년 대상 「새출발 크레딧」 신설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.

붙임: 「고령자 고용지원금」 사업개요
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미옥 사무관(☎ 044-202-7469)
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사업 목적

-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,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

□ 지원대상 기업

-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 - * 대기업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

□ 지원 요건

-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
-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*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

*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(장려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)

□ 지원 수준

-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

*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%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(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)

□ 지원 절차

